

신어와 표준어

박용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서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말들 가운데에는 일부러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게 재미 삼아서 또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말도 있다. 유행어로 한번 써 본 것에 지나지 않아 잠시 쓰이다 말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긴 생명을 가지고 우리말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말도 있다.

예를 들어 ‘새내기’, ‘도우미’, ‘외조(外助)’, ‘빨래방(--房)’ 따위는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신어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에도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말의 일부로 인정되어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라가 있다. 이들 말이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표준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은 표준어 모음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어사전의 표제어는 모두 표준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국어사전의 표제어 선정은 표준어 사정과 같은 엄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신어를 별다른 기준 없이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린 감이 있다. 국어사전 편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추가한 것이다. 널리 쓰이고 우리말 어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표준어로 봐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추가한 듯하다. 그 결과 국어사전들 간에는 표제어상에서 서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표준어로 인정되기 어려운 말이 표제어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오랫동안 널리 쓰여서 표준어로 인정될 만한 말이 표제어에서 빠진 데 따른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널리 쓰이고 있는 ‘홈페이지’, ‘네티즌’, ‘몸치’, ‘꽃미남’ 따위의 신어는 표준어로 인정하여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라갈 만한 말이다. 그리하여 최근 간행된 국어 중사전이나 소사전에는 이들 말이 표제어로 올라가 있다. 심지어 2000년 이후부터 쓰인 ‘얼짱’이라는 신어까지 표제어로 올린 국어 소사전도 등장하였다.

국어사전이 표준어 모음집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한다면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신어를 올릴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즉, ‘표준어 규정’, ‘표준어 모음’에 근거해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는 신어만을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행 ‘표준어 규정’, ‘표준어 모음’ 자체가 신어의 표준어 여부를 사정하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표준어 규정’, ‘표준어 모음’이 어떤 점에서 신어의 표준어 사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신어의 표준어 사정 기준으로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

2.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모음’의 검토

2.1. 표준어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현행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 함께 1988년 1월 19일에 고시(문교부 고시 제88-1호)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한글 맞

춤법'이 기본적으로 조선어 학회가 마련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개정안인 데 반해 '표준어 규정'은 새로운 제정에 가깝다. 표준어와 관련하여 조선어 학회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있었지만 이는 표준어로 사정한 결과만 실고 있을 뿐이라서 사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표준어 규정'에서 비로소 표준어 사정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표준어 사정 기준은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¹⁾

그런데 '표준어 규정'은 실제로 어떤 말에 적용하여 표준어 여부를 가리기엔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 '표준어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어 사정 기준에 따라 '표준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말의 표준어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신어의 표준어 여부를 사정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어 사정 원칙'의 문제를 차례대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표준어 규정' 제1항의 내용부터 문제라 할 수 있다. 제1항에는 체제상 구체적인 표준어 사정 기준의 가늠자 구실을 하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표준어를 정의하거나 표준어의 범위를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그대로 표준어 사정의 일반 원칙으로 본다면 서울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없이는 어떤 말이트든 표준어 여부를 가릴 수 없다. 즉, 서울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말이 실제로 교양 있는 서울 토박이가 두루 쓰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표준어 사정 기준도 다른 말의 표준어 여부를 사정하는 근거

1) '표준어 규정'은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 '표준 발음법'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대상이 되는 '표준어'의 범위 및 사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 '표준어 발음법'은 새로이 마련하여 따르던 것인데 이는 표준어의 어형뿐만 아니라 발음까지도 고려할 필요성을 재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로 삼기엔 다소 애매하게 제시되어 있다. 전체 24개의 세부 항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 단어들은’(제3항, 제4항, 제6항, 제9항), ‘다음 단어는’(제8항, 제10항, 제18항), ‘다음 단어에서는’(제11항) 따위처럼 그 밑에 제시하고 있는 용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듯이 서술되어 있어 다른 말로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머지 세부 항도 ‘널리 쓰이’거나 ‘사용되’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여 실제로 사용 빈도를 조사하지 않고는 다른 말의 표준어 여부를 가릴 수 없게끔 되어 있다.(제5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²⁾

게다가 ‘표준어 규정’은 전반적으로 여러 어형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둘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고행(원형)과 신형, 본말과 준말, 고어와 현대어, 한자어와 고유어, 방언과 서울말(또는 기존 표준어) 따위처럼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는 여러 어형 가운데에서 실제 사용 빈도에 근거하여 표준어를 사정한다. 그리하여 실제로 사용 빈도를 조사하지 않고는 다른 말의 표준어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지 않은 말은 아예 사정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에 대응하여 생겨나서 기존의 어떤 말과도 서로 짝을 이루지 않는 신어의 표준어 여부를 사정할 때에 현행 ‘표준어 규정’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고형(원형)과 신형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 표준어를 사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빈도가 더 높은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를 따르지만

2) 전체적으로 제7항(‘수’, ‘숫’과 관련된 문제), 제12항(‘웃’, ‘위’와 관련된 문제), 제13항(한자 ‘句’의 문제) 따위의 세 항만이 다른 말의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이들 세 항목도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에 있어서는 다소 혼선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제7항과 관련하여 ‘개미의 수컷’의 표준어를 본항에 맞춰 ‘수개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만 1’을 확대, 적용하여 ‘수캐미’로 할 것인지 얼마간 혼선이 있었고 제12항과 관련하여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의 표준어를 본항에 맞춰 ‘윗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로 보아 ‘다만 2’를 적용하여 ‘웃분’으로 할 것인지 얼마간 혼선이 있다.

어원 의식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³⁾ ‘나팔꽃’, ‘강남콩’, ‘주초’, ‘주착’, ‘나기’, ‘괴팍하다’ 따위의 고행(원형)이 이제 거의 또는 전혀 쓰이지 않고, 발음이 바뀐 ‘나팔꽃’, ‘강낭콩’, ‘주추’, ‘주책’, ‘내기’, ‘괴팍하다’ 따위의 신형이 널리 쓰이면 고행(원형)을 버리고 신형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러나 ‘휴지(休紙)’, ‘부조(扶助)’ 따위의 고행(원형)이 아직 쓰이고 있거나 어원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 ‘수지’, ‘부주’ 따위의 신형을 버리고 고행(원형)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는 고행과 신형의 사용 빈도 조사를 전제하므로 ‘표준어 규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말에 실제 적용하기 쉽지 않다.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는 어형도 절대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표준어 여부가 가려진다. 본말과 준말 가운데 더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고 둘 다 널리 쓰이면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언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본말이나, 빈도가 매우 낮은 준말은 표준어에서 제외한다. 본말과 준말에 있어서도 먼저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상대적인 빈도의 높낮이에 따라 표준어를 사정해야 하므로 ‘표준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말에 실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본말이든 준말이든 빈도가 낮다 할지라도 그 쓰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모두 표준어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어와 현대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도 사용 빈도에 따라 표준어가 결정된다. 특히, 쓰이지 않게 된 고어는 버리고, 용도를 잃게 된 한자어나 생명력을 잃은 고유어도 버린다. 그런데 ‘용도를 잃게 되’거나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은 현실 언어에서 사어 또는 폐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말을 표준어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방언과 서울말(또는 기존 표준어)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도 사용 빈도

3) 현실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와 어원 의식을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인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을 조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에 따라 표준어가 결정된다. 방언형이던 단어가 기존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삼고 그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되면 표준어에서 제외한다. 세력을 얻은 방언형은 표준어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는 방언형만을 표준어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인 빈도의 높낮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본말과 준말의 경우에서처럼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탓인지 실제 ‘표준어 모음’의 사정에서 이 규정에 따라 방언형이 표준어가 된 예는 전혀 없다.⁴⁾ 현재 방언형으로 처리되고 있는 ‘내음’, ‘나래’ 따위는 절대 ‘냄새’, ‘날개’ 따위보다 더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표준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련되는 규정대로라면 ‘내음’, ‘나래’는 ‘냄새’, ‘날개’보다 더 널리 쓰이지 않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형은 복수 표준어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방언과 관련된 사정 기준은 표준어와 대응하지 않는 방언형에 대한 표준어 사정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행(원형)과 신형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는 주로 사용 빈도와 어원 의식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으나⁵⁾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는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가 더(또는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것만을 표준어를 삼고(단수표준어) 둘 다 널리 쓰이면 모두 표준어로 삼는다(복수표준어). 그러나 단수표준어와 복수표준어로 사

4) 반면 ‘표준어 규정’에는 이와 반대로 방언의 인상을 강하게 주는 단어라서 비표준어로 처리한 예가 다수 포함돼 있다. ‘개지’, ‘곰탕’, ‘곰수머리’, ‘배춧패기’, ‘술개미’, ‘키장다리’ 따위가 그것이다.

5) 그런 면에 볼 때 ‘네’와 ‘예’, ‘쇠’와 ‘소’를 둘 다 인정하여 복수표준어로 삼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네’와 ‘예’는 이병근(1998)에 따르면 ‘네’는 수도권의 방언형이요 ‘예’는 그 밖의 지역의 방언형이다. ‘쇠’와 ‘소’도 엄밀히 ‘쇠’는 고어형이고 ‘소’는 현대어형이다. 그렇게 보면 이들은 모두 발음 변화와 관련된 고행(원형)과 신형의 관계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되어 어감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는데 이들 단어들은 별개의 단어로 봐야 할 것이라서 자연스러운 조처라 할 수 있다.

정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우가 조금씩 다르다.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는 어느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것만을 표준어로 삼고 둘 다 널리 쓰이면 모두 표준어로 삼아 본말과 준말을 대등하게 고려한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도 고유어와 한자어를 대등하게 고려한다.⁶⁾ 그러나 고어와 현대어, 방언과 서울말(또는 기존 표준어) 따위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는 고어, 방언보다는 현대어, 서울말(기존 표준어)을 더 고려한다. 사어 또는 폐어가 된 말은 고어로 처리하여 표준어에서 제외할 뿐, 고어로 봐 왔던 것이 현대 언어생활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어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⁷⁾ 그렇다면 현대 언어생활에서 어떤 식으로든 고어를 되살려 쓰는 일은 불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방언형은 기존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여야만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때에도 서울말(기존 표준어)은 표준어로 남는다.⁸⁾ 서울말(기존 표준어)이 사어 또는 폐어가 되어야만 방언형이 단수표준어가 된다.

2.2. ‘표준어 모음’의 표준어 사정의 실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준어 규정’이 내세우는 표준어 사정 기준은 다른 말의 표준어 여부를 사정하는 근거로 삼기엔 다소 애매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고유어 어휘에 한정되긴 했으나, 그간 널리 이용되어 온 “새한글사전”(한글학회 간행, 1965/1986년판)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간

-
- 6) 본말과 준말의 쌍에서처럼 둘 다 표준어로 삼는 경우에 대한 세부 항목이 없으나 제 5절 복수표준어의 예로 제시된 ‘다달이/매달(每-), ‘다박나록/다박수염(-鬚髯), ‘하나하나/일일이(一一-), ‘제가끔/제가기(-各其), ‘쪄구미/동자기둥(童子-), ‘뜯짓/뜯귀신(-鬼神), ‘매갈이/매조미(-糙米), ‘매통/목매(木-), ‘불뚝았다/등화았다(燈火-), ‘편지틀(便紙-)’편지투(便紙套)’ 따위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7) 원리적으로 고어와 현대어 모두를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대 언어생활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쓰임이 확인되는 이상 그 말은 더 이상 고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8) 사실상 복수표준어인 셈이다.

행, 1982년판)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 표제어 1,400여 개 정도를 대상으로 표준어 여부를 심의한 ‘표준어 모음’(1990. 9. 14., 문화부 공고 제36호)은 매우 중요하다. ‘표준어 규정’의 어느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심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⁹⁾

‘표준어 모음’은 되도록 복수표준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졌다. “언어생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어의 어휘는 풍부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유사한 음성형을 가지는 어형을 제외하고, 다른 기원을 가지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어형들에 대해서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유사한 음성형을 가지는 어형이란 고행(원형)과 신형의 관계에 있는 말을, 다른 기원을 가지면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어형이란 고어와 현대어, 한자어와 고유어, 방언과 서울말(또는 기존 표준어)의 관계에 있는 말을 가리킨다.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는 말은 원리적으로 유사한 음성형을 가지는 어형에 속하지만 모두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발음이 유사하더라도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되어 어감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며,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도 폭넓게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며,¹⁰⁾ 다른 기원을 가지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어형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고유어와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고유어의 관계에 있는 어형에서도 각각의 어형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¹¹⁾ 그렇지만 고어나 방언형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9) 그런 면에서 ‘표준어 모음’은 ‘표준어 규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주필(1990)을 참조하라.

10) ‘길륙’, ‘명구력’, ‘반대기’, ‘복생선’, ‘붙여잡다’, ‘지딱총’, ‘진신발’ 따위를 각각 ‘끼륙’, ‘구력’, ‘반’, ‘복’, ‘붙잡다’, ‘딱총’, ‘신발’ 따위의 잘못된이라 하여 준말만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드문 편이다.

11) 한자어와 한자어의 관계에 있는 어형이 보이지 않는 것은 ‘표준어 모음’이 고유어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한자어를 심의 대상으로 삼고 기본적으로 한자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결과이다.

유사한 음성형을 가지는 어형에 대해서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어느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더 널리(압도적으로) 쓰이는 어형을 표준어로 삼았다. 그러나 이때에는 어원 의식을 어느 정도 고려하였다. ‘기겁하다[← 기급하다(氣急-)]’, ‘내송[← 내흉(內凶)] 따위처럼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원에 충실한 어형이라도 현실적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에서 제외하지만 ‘상좌(上佐, ← 상재)’, ‘채송화(菜松花, ← 채송아)’, ‘여염집(閭閻-, ← 엽집) 따위처럼 어원적으로 더 가까운 어형이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았다. 다른 기원을 갖는 어형들에서도 ‘게꿍지(← 게꼬리)’, ‘덧신(← 덧구두)’, ‘바람둥이(← 바람꾼)’, ‘부레꿍다(← 부레꿍다)’, ‘지난해(← 간해) 따위처럼 어느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기도 하였는데 더 널리(압도적으로) 쓰이는 어형을 표준어로 삼았다. ‘개지(→ 강아지)’, ‘곰팡(→ 곰팡이)’, ‘곱수머리(→ 곱슬머리)’, ‘배춧괘기(→ 배추속대)’, 따위처럼 방언의 인상을 강하게 주는 단어는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표준어 모음’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표준어 규정’의 표준어 사정 기준과 부합한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발음 변화에 따른 고형과 신형의 관계에 있는 어형을 제외하고 말한다면, ‘표준어 규정’이 단수표준어와 복수표준어를 대등하게 고려하고 있는 데 반해 ‘표준어 모음’은 단수표준어보다는 복수표준어를 선호하고 있다. ‘표준어 규정’이 실제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더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어로 삼도록 한 데 반해(둘 다 널리 쓰이면 복수표준어로 함.) ‘표준어 모음’은 되도록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는 ‘표준어 규정’에서처럼 실제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어떤 말의 표준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표준어 모음’은 실제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다. ‘표준어 모음’은 몇몇 전문가의 주관에 따라 심의,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표준어 모음’은 실제 ‘표준어 규정’에 근거하여 표준어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어 규정’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어 사정 기

준을 훨씬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어떤 말의 쓰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표준어 모음’은 ‘표준어 규정’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어 다른 말의 표준어 여부를 사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상대적인 사용 빈도 차이에 따라 표준어를 사정했던 ‘표준어 규정’과 달리, 그 쓰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표준어 모음’의 기본 태도는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지 않은 말뿐만 아니라 신어의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3. 신어의 표준어 사정

“표준어 규정 해설”에 따르면 ‘표준어 규정’의 대상으로 ① 그동안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1933년 표준어로 규정된 형태가 고형이 된 것, ② 그때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③ 각 사전에서 달리 처리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 ④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 자리를 굳혀 가던 것 따위를 들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은 신어(신조어)의 표준어 사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준어 규정’은 주로 고형(원형)과 신형, 본말과 준말, 고어와 현대어, 한자어와 고유어, 방언과 서울말(또는 기존 표준어) 따위처럼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는 여러 어형에 대해서만 표준어 사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어는 기존의 어떤 말과도 서로 짝을 이루지 않는다. 고형(원형)과 짝이 되는 신형이 신어를 이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¹²⁾ 일반적인 신어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신어와 관련된 표준어 사정 기준이 없다 보니 신어의 표준어 여부를 사정하는 데 있어 ‘표준어 규정’은 제구실

12) 본말과 준말,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의 있는 말 가운데서도 신어가 일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명확하지 않다.

을 하지 못했다. ‘표준어 규정’을 적용하여 표준어 여부를 심의한 ‘표준어 모음’에서조차 신어는 심의 대상에 들지 못했다.

신어란 사회가 변화하여 이전에 없었던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면서 그에 대응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말이다. 대개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말이다. 따라서 이들 상당수는 표준어로 인정해 주어 원활하게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되도록 복수표준어를 인정한 ‘표준어 모음’의 기본 태도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신어 또한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정 기준에 근거하여 표준어로 인정받아야 한다. 신어 가운데 기존의 표준어와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를 갖는 말에 대해서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과 ‘표준어 모음’ 사정의 실재를 따라서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기원을 가지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어형들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에 있는 어형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물래녹음(--錄音)’, ‘어린이용(---用)’, ‘반사빛(反射-)’, ‘빛공해(-公害)’, ‘목인사(-人事)’, ‘방값(房-)’, ‘손전화(-電話)’ 따위의 신어는 각각 한자어인 ‘도청(盜聽)’, ‘아동용(兒童用)’, ‘반사광(反射光)’, ‘광공해(光公害)’, ‘묵례(默禮)’, ‘방세(房費)’, ‘휴대 전화(携帶電話)’ 따위의 일부를 고유어로 대치한 말로 일상 언어생활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므로 모두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계금(契金)’, ‘잡육(雜肉)’, ‘철문(鐵門)’ 따위처럼 ‘겻돈(契-)’, ‘잡고기(雜--)’, ‘쇠문(-門)’ 따위의 고유어를 한자(어)로 대치한 말도 더러 있는데 이 또한 그 쓰임이 확인되므로 모두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

그 밖에 기존 한자어에 대응하여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다. ‘촬영장(撮影場)’, ‘연체금(延滯金)/연체료(延滯料)’, ‘망명지(亡命地)’, ‘면회자(面會者)’, ‘내부자(內部者)’, ‘급여금(給與金)/급여액(給與額)’ 따위의 한자어 대신 커다란 의미 차이 없이 ‘촬영지(撮影地)’, ‘연체액(延滯額)’, ‘망명처(亡命處)’, ‘면회객(面會客)’, ‘내부인(內部人)’, ‘급여비(給與費)’ 따위의 한자어를 쓰기도 하고 ‘관례(冠禮)’, ‘고리대금융(高利貸金業)’, ‘처녀(處女)’,

‘장애자(障礙者)/장애인(障礙人)’, ‘조작극(造作劇)’, ‘수술실(手術室)’ 따위의 한자어 대신 약간의 의미 차를 두어 ‘성년례(成年禮)’, ‘사채업(私債業)’, ‘미혼녀(未婚女)’, ‘장애우(障礙友)’, ‘공작극(工作劇)’, ‘수술장(手術場)’ 따위의 한자어를 쓰기도 한다.¹³⁾ 또한 일반인이 뜻을 알기 어려운 ‘무매독자(無妹獨子)’, ‘뇌졸중(腦卒中)’ 따위의 한자어 대신 ‘무녀독남(無女獨男)’, ‘뇌중풍(腦中風)’ 따위의 한자어를 쓰기도 한다.¹⁴⁾ 이러한 한자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모두 복수표준어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내음’과 ‘나래’ 따위의 방언형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므로 ‘냄새’, ‘날개’ 따위와 함께 복수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대응하는 표준어가 없는 방언형도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표준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방언형과 관련된 신어도 폭넓게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표준어인 ‘흙냄새’와 더불어 널리 쓰이고 있는 ‘흙내음’도 표준어로 인정할 만하며, ‘봄냄새’와 ‘봄내음’도 둘 다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모두 표준어로 인정할 만하다. 방언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북한어의 어형도 우리말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면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¹⁵⁾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북한어로 처리한 ‘봄마중’, ‘쓴소리’, ‘방화문(防火門)’, ‘비판서(批判書)’, ‘야시경(夜視鏡)’, ‘주름막(--幕)’, ‘직보(直報)’, ‘하늘길’, ‘뒀추

13) ‘관례(冠禮)’, ‘고리대금업(高利貸金業)’, ‘처녀(處女)’, ‘장애자(障礙者)/장애인(障礙人)’, ‘조작극(造作劇)’, ‘수술실(手術室)’ 따위의 한자어 대신 ‘성년례(成年禮)’, ‘사채업(私債業)’, ‘미혼녀(未婚女)’, ‘장애우(障礙友)’, ‘공작극(工作劇)’, ‘수술장(手術場)’ 따위의 한자어를 새로이 만들어 쓰는 것은 ‘관례(冠禮)’는 민속이나 역사 분야에 제한적으로 쓰이고, ‘고리대금업(高利貸金業)’, ‘처녀(處女)’, ‘장애자(障礙者)/장애인(障礙人)’ 따위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고, ‘조작극(造作劇)’은 ‘정치 조작극’처럼 제한된 문맥에서만 쓰이는 데다가 ‘정치 조작극’으로 바꾸어 쓰기 어렵고, ‘수술실(手術室)’은 ‘실(室, 방(房))’의 의미가 두드러져 규모가 큰 공간을 가리켜 이르기엔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4) ‘무녀독남(無女獨男)’은 ‘무남독녀(無男獨女)’에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이고 ‘뇌중풍(腦中風)’은 ‘뇌졸중(腦卒中)’과 ‘중풍(中風)’을 혼효하여 새로이 만들어 낸 말이다.

15) 최근 들어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직접 유입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위' 따위는 우리말에서도 널리 쓰이므로 표준어로 봐야 한다. 이 가운데 '봄마중', '쓴소리'는 우리말의 '봄맞이', '고언(苦言)'에 대응하는 말이므로 이들은 복수표준어가 되는 셈이다.

고어도 현대 언어생활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면 현대어로서 표준어로 봐야 한다. 고어와 관련된 신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불교계에서 고어 '모로기'에서 파생된 '몰록'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다.

기존의 표준어와,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는 신어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여야 한다. '넘', '가전품(家電品)', '고속철(高速鐵)', '민증(民證)' 따위는 각각 '너무', '가전제품(家電製品)', '고속철(高速鐵道)', '주민 등록증(住民登錄證)' 따위의 준말로 우리말 어법에 비추어 봐도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준말에는 '명퇴[名退, ← 명예퇴직(名譽退職)]', '춘투[春鬪, ← 춘계 투쟁(春季鬪爭)]', '강추[強推, ← 강력 추천(強力推薦)]', '증시[證市, ← 증권 시장(證券市場)]', '전훈[轉訓, ← 전지훈련(轉地訓練)]', '공구[共購, ← 공동 구매(共同購買)]', '남친[男親, ← 남자 친구(男子親舊)]', '주총[株總, ← 주주 총회(株主總會)]' 따위가 같은 한자 두문자어가 많은데 이 또한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준말은 폭넓게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최근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섬[← 시험(試驗)]', '쌤[← 선생님(先生-)]', '떡튀[← 먹고 튀는 (사람)]', '정모[定-, ← 정기(定期) 모임]', '즐감[-鑑, ← 즐거운 감상(鑑賞)]', '얼짱[← 얼굴 짱(長)]' 따위와 같은 준말은 우리말에 어법에 크게 어긋나므로 표준어로 인정하기 어렵다.¹⁶⁾

기존의 말에서 자음이나 모음을 교체하여 어감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신어도 폭넓게 표준어로 받아들여야 한다. 음성 상징어가 발달한 우리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반질하다', '부르릉', '구시렁구시렁', '당글당글', '어리바리하다' 따위와 관련되는 '뻘질하다', '뿌르릉', '궁시렁구시

16) 인터넷상의 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준말의 특성에 관해서는 박용찬(2003⁷⁾을 참고하고 한자 두문자어의 특성에 관해서는 박용찬(2003⁴)을 참조하라.

령’, ‘딩글딩글’, ‘어러버리하다’ 따위의 신어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비슷한 발음의 몇 어형이 쓰일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쫘’, ‘장구잡이’, ‘달콤쌉싸름하다’ 따위는 각각 ‘증(證)’, ‘장구재비’, ‘달콤쌉싸래하다’¹⁷⁾ 따위에 대응하여 쓰이는 말인데 이들은 표준어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외래어·외국어 대신 새로운 만들어 쓰는 신어도 하는데 일상 언어생활에서 그 쓰임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표준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¹⁸⁾ ‘골뒤편이(goal--)’¹⁹⁾ ‘바람인형(--人形)’, ‘번개군중(--群衆)’, ‘바퀴신발’ 따위는 각각 ‘골세리머니(goal ceremony)’, ‘플라이 가이(fly guy)’, ‘플래시몹(flash mob)’, ‘롤러슈즈(roller shoes)’ 따위와 같은 외래어나 외국어 대신 쓰이는 말이다. 이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 순화어만을 표준어로 삼을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기존의 표준어와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를 갖는 신어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그런데 신어는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에 대응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말과도 서로 짝을 이루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를 갖는 말의 표준어 여부를 주로 다루고 있는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모음’으로는 신어의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모음’의 기본 태도나 근본정신에 입각한다면 이들 신어 또한 폭넓게 표준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원활한 국어 생활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신어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언어생활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17) ‘달콤쌉싸름하다’와 ‘달콤쌉싸래하다’는 ‘달콤하다’에 ‘쌉싸름하다’나 ‘쌉싸래하다’가 결합하여 생성된 신어이다.
 - 18) 표준어 사정과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순화어로 새로이 만들어 쓴 말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규범 사전의 성격을 갖는 국어사전에 반드시 표제어로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9)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2002년 ‘골세리머니(goal ceremony)’를 ‘득점 뒤편이(得點--)’로 순화한 바 있다.

우선 신어 가운데에는 임시어나 유행어의 성격을 갖는 말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임시어나 유행어는 표준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 쓰임이 확인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쓰이는 신어만을 표준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어의 생성과 관련하여 꾸준하고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그해에 생성된 신어를 조사하여 자료집으로 펴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길치(-癡)’, ‘몸치(-癡)’, ‘꽃미남(-美男)’, ‘난개발(亂開發)’, ‘농심(農心)’ 따위는 임시어나 유행어 단계를 지나 우리말의 어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감이 있다. 반면 ‘아햏햏’, ‘몸짱’, ‘취집(就-)’, ‘알박기’, ‘당근이다’ 따위는 현재 널리 쓰이고는 있으나 유행어로서 당분간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비속어, 은어로 쓰이는 신어도 표준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상스럽지 않은 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왕따(王-)’, ‘고삐리(高--)', ‘꼬시다’, ‘작업(作業, 이성을 유혹하거나 사귀는 일) 따위는 표준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속어, 은어라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끼’는 ‘바람기’의 ‘기(氣)’가 변한 말로 ‘연예에 대한 재능이나 소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이제는 표준어로 인정받고 있다. ‘짱’도 이와 유사하다. ‘짱’은 ‘어떤 조직체나 부서 단위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장(長)’이 변한 말인데 이제는 ‘가장 좋거나 훌륭함’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는 신어도 표준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는 신어까지 다량으로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면 자칫 우리말의 주요한 특성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막자과’, ‘놀자관’, ‘먹자촌’, ‘땃다방’ 따위처럼 동사의 종결형 뒤에 명사나 접사를 결합시켜 만든 신어나,²⁰⁾ 위에서 본 ‘먹튀[← 먹고 튀는 (사람)], ‘정모[定-, ← 정기(定期) 모임], ‘즐감[-鑑, ← 즐거운 감상

20) ‘먹자골목’/‘먹자관’/‘먹자과’, ‘신기료장수’, ‘싸구려/싸구려관’ 따위가 국어사전에 올라 있기는 하다.

(鑑賞)], ‘얼짱[←얼굴 짱(長)]’, ‘얼짱(←얼굴 짱)’ 따위처럼 고유어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신어는 표준어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먹거리’, ‘몰래 카메라’ 따위는 이전에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러운 말로 봐 왔는데 ‘덮밥’, ‘따로국밥’ 따위가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표준어로 인정해야 할 듯하다.

신어 가운데에는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외래어나 외국어 또한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에서는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라고 하여 외래어의 표준어 사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래어는 그때그때 사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외래어 사정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도 없다. 방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래어 사용은 얼마간 불가피하다.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은 모두 외국어라서 그것을 우리말(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꿔 쓰지 않는 한 그대로 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면에서도 일부 외래어는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외래어를 표준어는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신어 자료집인 “2002년 신어”와 “2003년 신어”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59.1%에 이른다. 이런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이다. 이런 외래어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면 우리말의 어휘는 머지않아 외래어(특히, 영어)로 넘쳐 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외래어의 특성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외래어에 대한 표준어 사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어로 인정할 수 없는 외래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순화어를 마련하여 일반인의 언어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신어 또한 원칙적으로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모음’에 근거해 표준어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모음’은 신어의 표준

어 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모음’이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는 여러 어형 가운데 어느 것을 표준어로 삼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신어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말과도 서로 짝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어 규정’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고(둘 다 널리 쓰이면 복수표준어로 삼음.) ‘표준어 모음’도 폭넓게 복수표준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따라서 신어의 표준어 여부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신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에 대응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말이다.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말이다. 따라서 이들 상당수를 표준어로 인정해 주어 원활하게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기존의 말과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에 있는 신어의 경우, 일상 언어생활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면 복수표준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비슷한 발음의 몇몇 어형이 쓰일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아야 한다. 기존의 표준어와 동의 관계나 유의 관계를 갖지 않는 신어도 폭넓게 표준어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시어나 유행어, 비속어나 은어,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말 따위는 원칙적으로 표준어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어에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신어 가운데에는 외래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외래어 상당수도 원활한 국어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표준어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외래어를 표준어로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외래어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말의 어휘는 머지않아 외래어로 넘쳐 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 외래어의 특성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표준어 사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외래어의 표준어 사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국어연구소(1987),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안 주요 내용’, “국어 생활” 9호(여름호), 국어연구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국어 생활” 제13호(여름호), 국어연구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 생활” 제13호(여름호), 국어연구소.
- 국어연구소(1988),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 경위’, “국어 생활” 제13호(여름호), 국어연구소.
- 국어연구소(1990), ‘표준어 모음’, “국어 생활” 제22호(가을호), 국어연구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연구원(2000), “2000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1), “2001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2), “2002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3),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 김완진(1991), ‘한국에서의 외래어 문제’, “새국어생활” 제1권 제4호(겨울호), 국립국어연구원.
- 김주필(1990),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국어생활” 제22호(가을호), 국어연구소.
- 김희진(1990),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의 몇 문제’, “국어생활” 제20호(봄호), 국어연구소.
- 남기심·김하수(1995), “단신은 우리말을 바르고 새롭게 쓰고 있습니까?”, 샘터.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민현식(2003), ‘국어 순화의 국어학적 연구’,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박용찬(2003ㄱ), ‘통신 언어의 실태와 문제점’,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연구원.
- 박용찬(2003ㄴ), ‘준말의 형성’, “현대 국어의 준말 목록”, 국립국어연구원.
- 송철의(1996), ‘국어 산책 - 표준어, 표준 발음과 국어 생활의 실제’, “새국어 생활” 제6권 제2호(여름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병근(1998), ‘국어학의 이해 - 표준어’,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여름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응백(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생활” 제13호(여름호), 국어연구소.
-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제13호(여름호), 국어연구소.
- 이정복(2003), ‘기존 순화어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이희승·안병희(1989),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허웅(1988), ‘맞춤법 · 표준말과 국어 생활’, “국어생활” 제13호(여름호), 국어연구소.